#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승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331

발의연월일: 2025. 2. 21.

발 의 자:조승환·김태호·임이자

인요한 • 안철수 • 이성권

김승수 · 김성원 · 최은석

나경원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소규모건축물 등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가 아닌 신고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, 해체신고 시 건축사 등 관계 전문가가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건축물 해체계획서에 건축사 등 검토를 받는 데 수십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도시재생사업에서 필수적인 빈 건축물 해체에 있어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.

이에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검토를 생략하여 불필요한 비용 및 절차를 개선하고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30조제3항 및 제5항).

법률 제 호

##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3항 중 "해체계획서"를 "해체계획서(제5항 단서에 따라 검토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말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물의 해체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해체계획서의 검토에 관한 적용례) 제30조제3항 및 제5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건축물 해체의 허가) ①.	제30조(건축물 해체의 허가) ①·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	3
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	
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	
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제4	
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5항에	
따라 검토된 <u>해체계획서</u> 를 첨	<u>해체계획서(제5항</u>
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	단서에 따라 검토가 생략되는
야 한다.	경우에는 관리자가 작성한 해
	체계획서를 말한다)
	<u>.</u>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	5
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가	
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	
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
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	
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,	
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	
검토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	
<u>&lt;단서 신설&gt;</u>	다만,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

	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
	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
	화지역 내 건축물의 해체를 신
	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
	<u>니하다.</u>
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
1..2. (

⑥ ~ ⑨ (생 략)

⑥ ~ ⑨ (현행과 같음)